

地方稅法令 質疑回信

- 行政自治部 稅政課 -

1.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질의】

형님의 사망으로 생전에 작성된 유증서류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지방세법 제120조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하였음.

형님의 사망후 49채를 끝마치고 상속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가족이 모여 상의하여 사망 후 약 5개월 정도 경과한 후 상속등기(유증포함)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려고 하였더니 납기후라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서를 고지하였음.

위와 같이 유증의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신고납부기한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취득일로부터 6월인지에 대하여 질의함.